
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16.

발의자 : 설훈 · 박남춘 · 진선미
이동섭 · 정인화 · 인재근
황희 · 신창현 · 윤호중
김두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그러나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, 자료제출의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,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7조).
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립”을 “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술보급사업 기본 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기술보급사업 기본 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-----</u>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p>